

2014년 1월 1일 시행
“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”

정직하고 안전한 거래환경,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 갑니다



■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란?

- 사업자 간의 구리 스크랩등 거래시 공급받는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(신한은행)에 개설한 공급자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지정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(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의 9)

■ 가입대상 :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

-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("구리 스크랩등")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
- ① 「관세법」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「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」(HS코드)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임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 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과상의 주조물
- ②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40% 이상인 물품

■ 주요 법령 사항

- 구리거래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 거래 쌍방 20% 가산세, 매입세액 불공제
- 공급시기 후 부가가치세를 지연 입금한 경우 1일 0.03% 가산세
-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·법인세에서 공제

■ 구리 스크랩 전용 거래 계좌가입 방법 (2013. 11. 1부터 가입 가능)

-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가입
- 상담전용 고객센터 또는 관할 세무서로 방문예약 신청
 - 신한은행 구리 스크랩계좌 상담전용 고객센터 또는 관할 세무서로 방문 예약하는 경우 은행직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서비스 제공

※ 원활한 결제를 위해 기업뱅킹서비스(인터넷 또는 폰뱅킹)이나 신한 S구리거래 앱(App)의 가입을 권장합니다.



〈 가입시 구비서류 〉

구 분	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
공통 준비서류(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)	• 사업자등록증 • 통장 사용인감 • 대표자 실명확인증표
법인인 경우 추가서류	• 법인인감증명서 • 법인 인감 • 법인등기부등본(기업뱅킹서비스 신청시 필요)
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	[법인] 위임장, 법인인감증명서, 대리인의 신분증 [개인사업자] 위임장, 개인인감증명서, 대리인의 신분증

※ 기업인터넷(폰)뱅킹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대리인 신규가 불가합니다. (계좌개설만 가능)

▶ 사업자를 위한 제도 설명회

- 제도 및 전용계좌 사용방법에 관하여 설명회 개최 예정(11월 중)
 - 설명회 참여를 원하시는 사업자는 구리거래계좌 상담전용 고객센터(02-2007-9470)로 참여 신청
- 설명회 일정은 개별통지 예정

■ 문의안내

상담전용 고객센터 02-2007-9470

폰뱅킹 1577-8008 (연결 622) / 1544-8008 (연결 622) / 1599-8008 (연결 622)

인터넷뱅킹 1544-8000 (연결 6442)

관할 세무서(부가·법인세과)

※ 구리거래계좌 및 관련 제도 안내는 www.cu-account.co.kr 또는 www.seeyou-account.co.kr 참조